

# 이천시 장애인재활작업장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

소관부서 : 노인장애인과

제정 2003·10·14 조례 제 466호  
일부개정 2014·3·21 조례 제1023호  
(이천시 조례 중 도로명주소 일괄정비조례)  
일부개정 2015·8·10 조례 제1133호  
일부개정 2020·6·30 조례 제1612호  
(이천시 조례 중 근로 용어 일괄정비조례)

**제1조(목적)** 이 조례는 장애인재활작업장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이천시 장애인의 재활자립의욕을 고취하고 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.

**제2조(명칭 및 위치)** ① 장애인재활작업장의 명칭은 이천시장애인재활작업장(이하 “작업장”이라 한다)으로 한다.

② 작업장은 경기도 이천시 원적로 290번길 14에 둔다. <개정 2014·3·21>

**제3조(업종)** 작업장의 업종은 「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」 제28조에 의한 도시형업종으로 한다.

**제4조(시설의 설치)** 시장은 「장애인고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」에 의해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제반시설 설치 및 운영에 노력하여야 한다.

**제5조(운영의 위탁)** ① 시장은 작업장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작업장 운영목적에 적합한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에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.  
<개정 2015·8·10>

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작업장을 수탁운영하고자하는자(이하 “수탁자”라 한다)는 시장에게 수탁을 신청하여야 하며, 시장은 신청자중 적임자로 판단되는 자를 수탁자로 지정한다.

③ 시장은 수탁자에게 작업장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으며 작업장으로 사용하는 건물과 부속토지 및 작업장 부대설비, 물품을 무상으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.

**제6조** 삭제 <2015·8·10>

**제7조** 삭제 <2015·8·10>

**제8조(고용대상 장애인등)** ① 작업장 고용대상 장애인은 이천시에 계속하여 6개월 이상 거주해 온 등록장애인으로 생산활동에 종사할 수 있는 자로 하고 가급적 장애유형을 구분하지 않고 모든 장애인이 노동할 수 있도록 개방하며 다음의 장애인을 우선 채용하여야 한다. <개정 2020·6·30>

1. 일반사업장에 취업이 곤란한 재가장애인으로 노동이 가능한 중증장애인
2. 당해 작업장의 기술훈련과정을 이수한 장애인
3. 당해 직종에 관한 기술습득이 가능한 장애인
4. 기타 운영규정에 시장이 별도로 명시한 장애인등

② 비장애인의 채용은 전체고용 인원의 10분의 1 범위내에서 생산공정상 필요할 경우 수탁자가 판단하여 채용한다.

**제9조(직원)** ① 수탁자는 작업장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 「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」 제42조에서 정한 직업재활시설 종사자 배치기준에 따라 종사자를 채용할 수 있다. <개정 2015·8·10>

② 시설장은 장애인 노동여건, 판매망 개척등 작업장의 운영·관리를 책임질 수 있는 자로 채용하고 작업장 운영을 총괄한다. <개정 2015·8·10, 2020·6·30>

[제목개정 2015·8·10]

**제10조(급여)** ① 제8조제1항 중 장애인에 대한 급여는 적정 월액으로 지급하되 자체수익의 범위내에서 최대한의 임금이 지급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수익금 규모를 판단하여 별도의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.

② 제8조제2항 중 비장애인과 제9조의 직원에 대한 급여는 수탁자와 피고용자간의 계약에 의한다.

**제11조(수익금의 사용)** ① 수탁자는 작업장의 수익금을 노동장애인의 인건비 및 복리후생을 개선하는 데 우선적으로 사용해야 한다. <개정 2015·8·10, 2020·6·30>

② 제1항의 용도로 사용하고 남은 수익금은 작업장 운영개선에 재투자 할 수 있으며, 수익금을 시설종사자에 대한 인건비 및 시설의 일반적인 관리운영비로 사용하려는 경우에는, 시설을 운영하는 법인 이사회 의결을 거쳐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. <개정 2015·8·10>

③ 제2항은 각 노동장애인에게 지급해야 할 인건비 최소한의 요건을 충족하는 시설에 한하여 적용하며, 수익금은 매출수익금을 말한다. <신설 2015·8·10, 개정 2020·6·30>

- 제12조(수탁자의 의무)** ① 수탁자는 고용장애인의 보호를 위해 노동관계법령을 준용하여야 하며 본 조례 이외의 사항은 관계법령 및 이천시에서 제정한 조례 등에 의한다.
- ② 수탁자는 작업장 운영에 지장이 없도록 시설 및 인원을 확보하여야 한다.
- ③ 수탁자는 작업장의 사용재산을 작업장의 운영 목적외에 사용할 수 없다.
- ④ 수탁자는 위탁운영 기간중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서 사용재산과 작업장 시설물의 보존책임을 다하여야 한다.
- ⑤ 수탁자는 작업장의 안전에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안전사고에 대한 책임을 진다.
- ⑥ 수탁자는 이 조례 및 관계규정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하여서는 아니된다.

**제13조(승인)** 수탁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.

1. 작업장 운영 계획 및 변경에 관한 사항
2. 제10조 중 고용장애인과 비장애인 및 직원의 급여 및 수당에 관한 사항
3. 작업장 운영을 위한 규정의 제정과 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
4. 제11조제2항의 수익금의 사용에 관한 사항
5. 기타 시장이 정하는 사항

**제14조(보고)** 수탁자는 다음 사항을 시장에게 분기별로 보고하여야 한다.

1. 급여 지급 등의 회계운영에 관한 사항
2. 작업장 운영에 관한 사항
3. 기타 시장이 정하는 사항

**제15조(지도감독)** ① 시장은 작업장 운영에 관하여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조사하게 하거나 장부 기타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조사 및 검사에 응하여야 한다.

②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 또는 검사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수탁자에게 시정을 지시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.

**제16조(위탁의 취소)**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그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. <개정 2015·8·10>

1. 수탁자가 제12조의 의무를 위반하였을 때
2. 수탁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제15조의 감독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시정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을 때
3. 수탁자가 작업장의 운영능력이 없다고 인정될 때
4. 수탁자가 위탁조건을 위반하였을 때
5. 공익상 작업장을 위탁 운영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

**제16조의2(위탁재산의 귀속 등)** 위탁계약이 취소 또는 만료된 때에는 작업장 운영에 사용하던 모든 시설, 장비, 비품 및 증가된 재산 등은 이천시에 귀속된다.

[본조신설 2015·8·10]

**제17조(시행규칙)**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

부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칙 <2014·3·21 조례 제1023호, 이천시 조례 중 도로명주소 일괄정비  
조례>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칙 <2015·8·10 조례 제1133호>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칙 <2020·6·30 조례 제1612호, 이천시 조례 중 근로 용어 일괄정비조례>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